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1나574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가단2873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C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 B(C 생,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4. 30.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의 사망 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룬 것일 뿐이므로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러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어 피고를 선의로 인정하기 위한 피고의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준서,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등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철근콘크리트조 병설래 4층 다세대주택

지하층 108.78㎡(용도·주차장 56.28㎡ 주택 52.50㎡)

1층 108.78㎡(2세대)

2층 108.78㎡(2세대)

3층 108.78㎡(2세대)

4층 108.78㎡(2세대)

옥탑층 13.2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 398.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철근콘크리트조 51.48㎡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398.3분의 25.478. 끝.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원고는 현재 소외 채납자 B(이하 '채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94,072,690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채납내역).
- 2) 亡 D의 공동상속인으로 위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 E과 위 망인의 자녀인 채납자, 피고 A(이하 '피고'라 합니다) 총 3인이 있었는데, 위 3인은 2019.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2.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3호증 등기사항증명서, 갑 제4호증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나. 채납경위

채납자는 2015. 2. 13.부터 2016. 3. 31.까지 '서울 동대문구 F, 1층'에서 'G 주유소(석유류 도소매업)'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사업자 이력조회). 채납자는 위 사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 2016년 주식회사 R와 사이에 재화 매입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하였는데, 2019. 1. 4.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산하 동대문세무서장은 당초 채납자가 과다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36,242,92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채납자는 2018. 6. 27.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산하 관악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44,125,360원을 고지하였고 채납자는 소제기일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재기일 현재 채납자의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채납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내역).

<표 1> 소재기일 현재 채납자의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국세채납내역

(단위 : 원)

관 할	세 목	귀 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채납액
합계				80,368,280	94,072,690
관악	종합소득세	2017년	2018-10-03	21,967,970	27,108,220
관악	종합소득세	2017년	2018-12-15	22,157,390	26,644,250
동대문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12-31	36,242,920	40,320,220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채납자와 피고를 포함한 ㉸ D의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이 체결된 2019. 4. 30.이고, 이 사건 관악세무서 관할 채납의 납부기한은 2018. 12. 13. 이전이므로, 이 사건 국세채무액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는 반기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9. 6. 30.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동대문세무서 관할 체납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2019. 1. 4.에 확정되어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고지되었을 뿐, 부가가치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재화의 매입행위는 2015년 ~ 2016년에 있었으므로 최후 과세기간인 2016. 12. 31.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¹⁾(갑 제6호증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갑 제7호증 법원판결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9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2017. 12. 31. 및 2016. 12. 31.에 각각 성립하여 사해행위가 있었던 2019. 4. 30. 이전에 이미 국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18. 10. 3., 2018. 12. 15., 2019. 12. 31. 납부기한으로 국세가 고지되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 3) 그렇다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한 94,072,690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일인 2019. 4. 30.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 1) 사해행위일 현재 체납자는 적극재산으로 22,872,259원(이 사건 부동산 중 7분의 2지분 22,742,857원²⁾ 포함)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관악세무

1) H(2018. 5. 18.) 참조

2) (공동주택공시가격 - 근저당채무액) × 상속지분 = (103,000,000원-23,400,000원) × 2/7

서 및 동대문세무서, 고양세무서 관할 국세채납액 본세만 284,016,870원에 달하여 이미 무자력(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1호증 채납내역).

<표2>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현황

구 분	내 역	평가액(원)	비 고
부동산	서울 강서 I건물 J호 중 2/7 지분	22,742,857	이 사건 부동산 (갑 제8호증 공시가격)
예금	우리은행 K	13,642	예금 잔액 (갑 제9호증 금융거래 내역)
	우리은행 L	23	
	하나은행 M	5,304	
	하나은행 N	18,369	
	더좋은새마을금고 O	6,412	
	국민은행 P	81,138	
	카카오뱅크 Q	4,514	
적극재산 계		22,872,259	
조세채무	국세 채납액	80,368,280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국세채납액 본세
		203,648,590	타 지방청 관할 국세채납액 본세
소극재산 계		284,016,870	
합 계		△261,144,611	채무초과

2) 소결

위와 같이 채납자는 사해행위일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소외 E 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나. 사해행위 및 채납자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이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 3) 위 가. 2)항의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2019. 4. 30.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은 사해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채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였음이 분명합니다.

3. 피고의 악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존재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익자의 악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가 채납자와 형제지간으로서 채납자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약정을 할 당시 위 약정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납자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제척기간

가.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도과 여부

이 사건 사해행위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2019. 4. 30.이고,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나.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도과 여부

원고 산하 국세청은 약 2만 명의 국세공무원을 두고 있는 대규모 조직으로 분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내부사무처리규정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체납추적팀, 이하 '체납추적팀'이라 합니다)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327호, 2019. 9. 3. 공포) 제177조 참조), 체납추적팀은 일선 세무서에서 요청한 혹은 자체적으로 선정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하여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2327호, 2019. 9. 3. 공포) 제178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체납추적팀은 주기적으로 국세청 내부전산망의 자료를 추출하여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0. 4. 23. 역시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의 사해행위 혐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사해행위 혐의를 발견하였고,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 출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2020. 4. 24.로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나20266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0629 판결 등 참조).

5. 원상회복

-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인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
- ③ 채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 ④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亡 D에게서 채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6.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채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에 기해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

